

Yeosu Web Contents

2025년 03월 22일 03시 08분



목차

목차	2
2016년	3
(완료)어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	3

2024년	2023년	2022년	2021년	2020년
2019년	2018년	2017년	2016년	2015년
2014년				

(완료)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

2016.04.29 조회수 825

○ 추진배경 - '15. 1. 1.일자로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「여수시세 감면 조례」중 종교단체(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)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- 감면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속적 감면 필요성에 의하여「여수시세 감면조례」중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○ 주요내용 - 종교단체(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)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(「지방세법」제11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75(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)를 경감 ○ 추진상황 - 방침결정 : '15. 3. 17. - 입법예고 : '15. 3. 17.~ 4. 6.(20일간) - 의회의결 : '15. 7. 28. - 조례공포 : '15. 8. 12.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

(완료)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업관리이력서.hwp (247 hit/ 10.0 KB)


[미리보기](#)
[목록](#)

이전글

[\(완료\)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](#)

다음글

[\(완료\)오동도입구\(동백\) 공영주차장 신축사업](#)

Yeosu Web Contents

